

꿀벌 보전시설의 기준(제4조의2 관련)

1. 시설 기준

- 가. 섬(島) 지역 등 격리가 가능하고, 밀원식물 조성 등 사육 환경이 적절한 장소에
위치할 것
- 나. 외부의 다른 꿀벌과 접촉이 통제될 수 있는 차단시설을 갖추는 것
- 다. 양봉사, 관리실, 분석실, 소독시설을 갖추고, 각 시설은 통풍, 채광, 방충, 방습 및
청결 유지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
- 라. 방역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하고, 출입 동선을 분리할 것
- 마. 인공수정 장비, 현미경, 곤충관찰 장비, 양봉기자재를 갖추는 것

2. 인력 기준

- 가. 꿀벌 보전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시설 책임자 1명 이상을 갖추는 것
- 나. 꿀벌의 보전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(연구사·연구관 또는 지도사·지도관) 1명 이상을 갖추는 것
- 다. 연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 인력 1명 이상을 갖추는 것